

제22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

# 검 토 보 고 서

(구의회사무국)

2021. 2. 18.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관한 조례 개정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57호
- 나. 제 출 자 : 강수정의원
- 다. 제출일자 : 2021. 2. 8.
- 라. 회부일자 : 2021. 2. 8.

### 2. 제안이유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안 제2조)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순화(안 제1조 ~ 제11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일부개정 조례안 : 별도 첨부
- 2)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 첨부
- 3) 입법예고 : 2021. 2. 8. ~ 2. 15.
- 4)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구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적용하여 조례의 조문을 순화하고자 함입니다.

나.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 (안 제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순화(안 제1조~제11조)

## 다. 검토결과

기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였으나 제2차 정례회 기간으로 변경하여 당해 연도의 추진 정책과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감사가 기대됩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와 연계되어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